

2023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97-23 외 1필지(창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11. 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 명주참고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97-23	관련지번	297-24	
	대지면적	33,593.7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준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8,512.52㎡	건폐율	55.11%	층 수 지하 : 1층 지상 : 4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합성구조, PEB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23.8m	용적률	107.40%	연면적 합계 38,887.5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PEB 시공계획서는 착공 전 시공사에서 작성하여 PEB 구조설계자 및 현장감리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바람. ○ 건축감리 구조협력 업무에 차질없도록 착공 전까지 업무수행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. (원설계 의도가 시공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와 협력 권장) ○ 합성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성구조의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설계자의 확인을 받기 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
	(토질)분야	○ 기초파일에 대한 지지력과 침하를 검토바람. ○ 포장구간에 포장하중과 차량하중을 고려한 압밀침하에 대해 검토 하고, 발생침하량에 따른 우, 오수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